

의안번호	제 호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 「고룡이」
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 연월일	2023. 9. 1.

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 「고룡이」

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9. 1.

제 출 자: 고성군수

1. 폐지이유

상위법령의 개정 및 행정변화 등에 따라 적용대상이 사라져 사문화(死文化)되었거나 유명무실하게 된 조례를 일괄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고성군 마스코트 「고룡이」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(안 제1조)

- 고룡이 상표권 사용기한 만료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

나.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 제2조)

-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청산에 따라 조례가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고성군 마스코트 「고룡이」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」, 「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- 성별영향평가(복지지원과)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3-1172호

가) 예고기간: 2023. 7. 10. ~ 2023. 7. 31.(21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 「고룡이」
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조례안

제1조(「고성군 마스코트 「고룡이」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」의 폐지)

고성군 마스코트 「고룡이」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제2조(「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폐지)

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 「고룡이」
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-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
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

□ 고성군 마스코트 「고룡이」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고성군마스코트 『고룡이』 상표(이하 “상표”라 한다)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“상표”라 함은 고성군마스코트 『고룡이』가 표시된 상표를 말한다.

② “특산품”이라 함은 고성군내(이하“군내”라 한다)에서 생산,가공된 생산품으로서 국가나 도,군,농협등 공신력있는 기관단체에서 인정받은 상품을 말한다.

③ 캐릭터상품이라 함은 고성군마스코트 『고룡이』를 이용한 상품을 말한다.

제3조(사용신청) ① 상표를 특산품 등에 표시, 광고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
2. 고성군수(이하“군수”라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명품, 경쟁 상품 생산자

②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가 상표 사용을 승인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③ 생산자가 상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표도안(모형)을 첨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01.1.18 조 1677>

제4조(사용의 승인) ① 제3조에 의거 상표사용 신청이 있으면 군수는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이내에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8. 9. 조 2422>

② 사용승인이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승인서를 교부한다.

③ 상표사용 유효기간은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. 다만, 신청자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는 2년간씩 계속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) ① 상표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농·수·축산물 및 그 가공품(공산품) : 무료
2. 일반 공산품 : 상품판매금액의 3/1,000
3. 캐릭터 상품 : 상품판매금액의 10/1,000이상 쌍방간협의를 의거 결정

② 사용료부과 조사는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등에 의한 서면 또는 직접 조사할 수 있다.

③ 상표사용료는 관계공무원이 상표사용 상품판매 실적을 매년 12월말에 확인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부과 고지하고 납부기간은 30일로 한다.

제6조(사용의 취소) ① 상표사용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고의로 군 또는 상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
2. 타지역 상품을 군내 생산품인 것처럼 포장 판매할 때
3. 기타 허위로 군 또는 상표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

② 제1항에 의해 승인을 취소받은 자에 대하여는 등록상표 사용을 중지시키고 중지일로부터 2년간 재사용 승인할 수 없다.

제7조(청문) ① 사용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2.10.15. 조 2082>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 부 칙 <98. 8.24 조 1559 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성군 『고룡이』 상표사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 『고룡이』 상표사용 승인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폐지규정)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고성군 『고룡이』 상표사용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부 칙 <2001. 1.18 조 1677 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부 칙 <2012.07.02. 조 2072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부 칙 <2012.10.15. 조 2082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부 칙 <2018. 8. 9. 조 2422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할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고성군 교육발전기금"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이란 각급 학교의 교육 환경개선사업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.
2. "출연금"이란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고성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.

제3조(명칭 및 설립) ① 명칭은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제4조(사업)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1. 군내 각급 학교 및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2.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주민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생 선발 및 지급
3. 예능·체육·기능 등 특정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과 학교에 대한 후원 사업
4.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(정관) ① 위원회의 정관은 「민법」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② 위원회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6조(임원) ① 위원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회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의 정수에 맞는 이사와 감사를 둔다.

② 군의 교육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며, 이사와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③ 이사장은 총회에서 이사 중 선출하며, 군수 및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

취임한다.

제7조(기금의 조성)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회원의 회비
2. 군의 출연금
3. 개인, 기관, 단체의 기부금
4. 그 밖의 수입금

제8조(출연금 지원 및 사용) ① 군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출연할 수 있다.

② 군에서 출연한 기금(이자를 포함한다)은 위원회의 정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) ① 위원회 기금조성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군의 출연금 외에도 기부금, 그 밖의 수입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업실적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공유재산의 사용 등) 군수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대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출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운영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장으로 하여금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2조(위원회에 대한 제재) 군수는 위원회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
1.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
2. 장학사업 등 위원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

3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
4. 지도·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
5.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

제13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다른 조례의 폐지) 고성군 인재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- ③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성군 인재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및 그 위원회에서 조성한 기금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설립 및 출연한 것으로 본다.